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대북 지원 사업의 정보공개, 협력기금 지원 중단, 취소, 환수를 위한 근거조항을 보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지원사업 비공개 근거규정 삭제

-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지원사업을 종래 사업완료 및 정산시까지 비공개하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법에 맞게 ‘공개’하도록 하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내역 등재 및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선

나. 물자반출신청시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재원출처 명시

-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반출신청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출처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 보조금 관리 투명성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개선

다.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조정

- 지원 기준을 연 1회, 50%로 하며,(안 제7조 제5항), 기금지원시 단체 사업추진 역량을 고려하고(안 제6조 제7호), 협력기금 지원 중단, 취소, 환수를 위한 근거조항을 보완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환수 규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통일부고시 제 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구호"를 "긴급구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중 "조달계획"을 "조달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액 포함)"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체"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북한"을 "북한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
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를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및 분배투명성 제고"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4항제4호 중 "자체재원"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
로부터 지원실적, 자체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3회"를 "
1회"로, "70%"를 "50%"로, "있다(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
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원자금을 받으려는 기금지원사업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⑦ 통일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금지원사업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지원의 중단 등)"을 "(기금지원의 중단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5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회수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자가 제9조에 따른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중단, 취소, 또는 회수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으로, "7일"을 "20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분배투명성의 확인)"을 "(지원물자 반출 및 분배투명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물품 반출을 한"을 "물품의 반출승인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기타 통관서류 등"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대북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과 자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비공개)"를 "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중 "통일부장관"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6조10에 따라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내역을 성실히 등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2023년 2월 1일"을 "2023년 8월 1일"로, "1월 31일"을 "7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북협력기금지원신청서			
① 신청인 (단체명)	한글 : 한자 :	②대표자	
③주소	(TEL) (FAX)		
④사업명			
⑤사업상대자			
⑥기금신청금액	총소요자금 :		
	자체재원확보액 :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액 :		
	기금지원신청액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 2.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1부 3.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 1부 4.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 상대방과의 의향서 등 포함) 1부 6.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대북지원자금사용보고서				
①보 고 인	단 체 명 명 (성 명)	한글 : 한자 :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협력사업승인 (변경) 번 호			
② 사 업 상대자	단 체 명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③사업기간				
④사업 주요실적				
⑤자금 사용 총액		⑥자체재원확보액		
		⑦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액		
⑧지원자금수령액				
⑨지원자금사용액				
⑩지원자금불용액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대북지원자금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구 비 서 류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추진실적			수수료
	2. 자금사용명세서 및 주요 증빙서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가. 이재민의 <u>구호</u> 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나. ~ 다. (생략) 2. 3. (생략)	제2조(정의) ----- -----. 1. ----- ----- ----- ----- -----. 가. ----- <u>긴급구호</u> ----- ----- 나. ~ 다.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제3조(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 다. (생략) 라. 소요자금 및 <u>조달계획</u>	제3조(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조달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액</u>

	<u>포함)</u>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생 략)	제5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u>단체</u> 또는 <u>지방자치단체</u>	2. ----- ----- <u>단체</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 (생 략)	제7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북한</u> 의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 관련	5. <u>북한주민</u> ----- -----

대북지원사업	-----
6. <u>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u>	6. <u>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및 분배투명성 제고</u> ----- -----
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④ 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u>자체재원</u> 집행실적 등)	4. ----- -- <u>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실적, 자체재원</u> ---
5. 6. (생 략)	5. 6. (현행과 같음)
⑤ 기금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연 <u>3회</u> 에 한	⑤ ----- ----- ----- <u>1회</u> -----

해(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각 사업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당 연 1회에 한해(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대북지

----- 50%
-----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지원자금을 받으려는 기금지원사업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원한 기금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⑦ 통일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금지원사업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취소)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

<신 설>	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 은 경우
<신 설>	4. 제5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 은자가 제9조에 따른 집행절 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 우
<신 설>	5.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 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 상 지속되거나 해당단체가 투 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 다고 판단될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 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 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중단, 취소, 또는 회 수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를 통 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	제11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

신청)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 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 출신청자는 동 사실을 제출서류 에 적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 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반출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제12조(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물품 반출을 한 자는 반출된 물품의 분배투 명성에 대한 증빙책임을 지며,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 명성확인보고서 및 반출결과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물품이 단일지역에서 분배 되는 단순물품인 경우에는 제1 호 및 제2호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물자 반출 및 분배투 명성의 확인) -- 물품의 반출승 인을 받은 -----
1. ~ 3. (생 략)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통관서류 등 -----

제1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사전협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대북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과 자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비공개) <신설> 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① 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6조10에 따라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 ----- ----- ----- ----- ----- -----.

② 통일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제출받은 후에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한다. 다만,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제출 전에 국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내역을 성실히 등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 ----- ----- 2023년 8월 1일 ----- ----- ----- 7월 31일 ----- ----- ----- -----.